

[붙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사전 안내

2014. 12.

「장애인복지법」 제73조에 의거,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시행함에 따라
관련 학과 담당자 및 응시예정자를 대상으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
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제적 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공기관
대한민국 서포터즈

목 차

1. 응시자격 점검의 필요성	1
2.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	1
3. 언어재활 관련 학과 및 학위 취득 안내	2
4.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안내	2
5. 응시자격 점검용 체크리스트	4
6. 응시원서 접수 절차	5
7 자주 묻는 질문	6

1

응시자격 점검의 필요성

(1) <응시자>는 사전에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 관련 교과목 이수 등 응시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야 함.

(2) <대학담당자>는 법에서 규정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 부족한 과목은 추가 개설하고, 법정교과목명과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과목명을 변경하거나 국시원에 '동일과목 인정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법정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과목이라고 판단하여 동일과목 인정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법정교과목명으로 개설하기를 권장함.**

2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1)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국내대학	2012년 8월 6일 이후 언어재활 관련 학과 입학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
	2012년 8월 5일 이전 언어재활 관련 학과 입학	<input type="checkbox"/> 2012년 8월 5일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 <input type="checkbox"/> 2012년 8월 5일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 후 학위 취득
외국대학		<input type="checkbox"/>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복수전공자의 재학시점은?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입학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언어재활 관련 학과 학

기가 최소 개시되는 날부터 재학 중인 것으로 봄. 예를 들어 복수전공 승인일자가 2012년 3월 14일인 경우, 2012년 9월부터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판단함.

3 언어재활 관련 학과 및 학위 취득 안내

(1) 언어재활 관련 학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번호	구분	해당 학과																									
1	학과명(과정명,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언어재활과, 언어청각치료학과, 언어병리학전공 등																									
2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table border="1"> <thead> <tr> <th>인정대학</th> <th>인정학과</th> <th>인정일</th> </tr> </thead> <tbody> <tr> <td>가톨릭상지대학교</td> <td>언어교정과</td> <td rowspan="7">2013. 5. 20.</td> </tr> <tr> <td>김천대학교</td> <td>재활언어교정과</td> </tr> <tr> <td>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td> <td>특수교육학과 청각언어장애아교육전공</td> </tr> <tr> <td>순천제일대학교</td> <td>언어교정과</td> </tr> <tr> <td>전주기전대학</td> <td>언어교정과</td> </tr> <tr> <td>춘해보건대학교</td> <td>유아특수치료교육과</td> </tr> <tr> <td>혜전대학교</td> <td>언어교정과</td> </tr> <tr> <td>김천대학교</td> <td>재활과</td> <td rowspan="3">2013. 12. 2.</td> </tr> <tr> <td>대구보건대학교</td> <td>언어교정과</td> </tr> <tr> <td>충북보건과학대학교</td> <td>언어청각보청과</td> </tr> </tbody> </table>	인정대학	인정학과	인정일	가톨릭상지대학교	언어교정과	2013. 5. 20.	김천대학교	재활언어교정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청각언어장애아교육전공	순천제일대학교	언어교정과	전주기전대학	언어교정과	춘해보건대학교	유아특수치료교육과	혜전대학교	언어교정과	김천대학교	재활과	2013. 12. 2.	대구보건대학교	언어교정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언어청각보청과
인정대학	인정학과	인정일																									
가톨릭상지대학교	언어교정과	2013. 5. 20.																									
김천대학교	재활언어교정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청각언어장애아교육전공																										
순천제일대학교	언어교정과																										
전주기전대학	언어교정과																										
춘해보건대학교	유아특수치료교육과																										
혜전대학교	언어교정과																										
김천대학교	재활과	2013. 12. 2.																									
대구보건대학교	언어교정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언어청각보청과																										

※ 반드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수료는 인정되지 않음.

4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안내

(1)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및 실습과목 이수시간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 [별표 6의2]

구분	교과목	비고
필수과목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총 90시간 이상 이수(단, 교내 수업시간 45시간 이상 포함)
선택과목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 9개 교과목 선택하여 이수

(2) 동일과목 인정 기준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 [별표 6의2]

○ 각 대학별 개설된 과목이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외의 명칭일 경우 아래 인정기준에 따라 동일과목 여부를 판단함

번호	구분
1	<p>법정교과목명에 아래의 명칭이 결합된 과목</p> <p>~학”, “~(개, 원)론”, “~세미나”, “~연구”,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 “~Ⅱ”, “~(및) 실험(습, 무)”, “~(및) 연습”, “~치료”</p> <p>예) 청각학개론, 청각학1 등</p>
2	<p>동일과목 인정심사를 통해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과목</p> <p>※ 전체 대학에 인정되는 과목(<별첨> 참조)</p> <p>※ 개별 대학에만 인정되는 과목(해당 대학(학과) 또는 국시원에 문의)</p>

(3) 동일과목 인정심사 안내

○ 각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 중 법정과목과 명칭만 다르고 내용이 동일한 과목은 국시원에 심사를 신청하여 동일과목인지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함.

[동일과목 인정심사 절차]

동일과목 인정심사 신청 서류 접수



동일과목 인정심사위원회 개최



인정 여부 결정(보건복지부 승인)

※ 제출 서류 : 동일과목 인정심사 신청서, 강의계획서, 교재 표지 및 목차

-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관련 교과목 등의 교과과정 변경 시 법정과목명이나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과목명 사용을 권장함.

5

응시자격 점검용 체크리스트

(1) 2012년 8월 6일 이후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입학하여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

구분	하위구분	체크 항목
관련 전공	입학 및 재학시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2012년 8월 6일 이후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입학 <input type="checkbox"/> 복수전공 승인절차를 거쳐 2012년 8월 6일 이후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최초 학기 시작
	학과명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학과명(과정명,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input type="checkbox"/>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p.2 참조)
	학위 취득	<input type="checkbox"/>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 또는 학위 취득 예정
관련 교과목 이수	교과목 이수	<input type="checkbox"/> 법정교과목 또는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과목 이수(필수 10과목, 선택 9과목)
	실습시간 이수	<input type="checkbox"/> 언어재활관찰 30시간 이상 이수 <input type="checkbox"/>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총 90시간 이수(단, 교내 수업 시간 45시간 이상 포함)

(2)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

구분	하위구분	체크 항목
관련 전공	학과명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학과명(과정명,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input type="checkbox"/>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p.2 참조)
	학위취득	<input type="checkbox"/> 2012년 8월 5일 이전에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

(3)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 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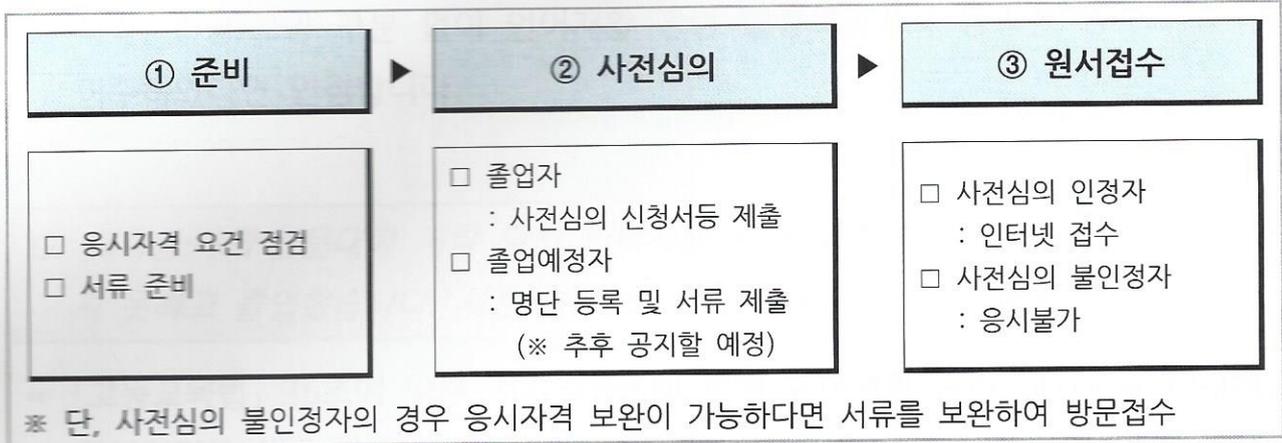
구분	하위구분	체크 항목
관련 전공	입학 및 재학시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2012년 8월 5일 이전에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입학 <input type="checkbox"/> 복수전공 승인절차를 거쳐 2012년 8월 5일 이전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최초 학기 시작
	학과명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학과명(과정명,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input type="checkbox"/>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p.2 참조)
	학위 취득	<input type="checkbox"/>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 또는 학위 취득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절차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서비스

국시원에서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원서접수 전 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응시자격 사전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심의를 통해 응시자격이 인정된 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2)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졸업예정자	졸업자
①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	졸업예정자	제출
② 학위(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매	등록으로 대신함	제출
③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 증명서 1매	제출	제출
④ 성적증명서 1매	제출	제출
⑤ 수강신청확인서 1매	해당자에 한함	제출하지 않음

(3)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복수전공자의 경우, 복수전공 승인 일자가 포함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전심의 신청서는 졸업자만 제출함. 졸업예정자는 대학담당자를 통해 국시원 홈페이지에 졸업예정자 등록으로 대신함.

※ 응시자격 사전심의 미신청자의 경우

- ☞ 인터넷 접수 불가
- ☞ 방문 접수 시 응시원서와 졸업(예정)증명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 수강신청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자주 묻는 질문

Q.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만 인정되나요?

☞ 학과, 전공/교양 구분 없이 언어재활 관련 법정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인정합니다.

Q.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재학 당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했습니다. 시간제등록으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해도 인정되나요?

☞ 「고등교육법」 36조에 따른 시간제등록에 의해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합니다. 단,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5년 2월에 바로 졸업이 가능하지만,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인해 졸업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 반드시 학칙을 참고하여 본인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졸업기준 학점, 졸업시험, 논문, 공인어학성적 등)을 모두 갖추었다면 응시가 가능하며, 합격자 발표 후 「졸업 유예자 명단」을 공문으로 국시원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단, 자격증 발급신청은 졸업일 이후 가능).

졸업유예자 공문 예시

수신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경영지원국장)

제목 : 0000년도 제00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졸업 유예자 명단 송부

0000년 00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 유예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인적사항

학과	성명	생년월일	비고

나. 위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기준학점 이수 및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0000년 00월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취업준비 등을 위하여 졸업을 유예하오니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 첨>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

※ 동일과목을 이수한 경우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구분	법정(기준)과목	동일과목
필수 과목	언어재활관찰	언어임상관찰, 언어임상관찰 및 현장실습, 언어재활관찰2C, 언어재활관찰 및 보고서작성, 언어치료관찰, 언어치료관찰1, 언어치료관찰2, 언어치료관찰실습, 언어치료임상관찰, 임상관찰, 임상관찰실습
	언어진단실습	언어임상실습1, 언어임상평가실습, 언어진단실습1C, 언어진단실습3, 언어진단훈련
	언어재활실습	언어임상치료실습, 언어재활실습2C, 언어재활실습3, 언어치료실습, 언어치료실습1, 언어치료실습2
	신경언어장애	신경말언어장애
	음성장애	음성장애의진단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말언어장애의진단 및 평가, 말언어장애진단 및 평가, 언어장애진단, 언어진단훈련, 의사소통장애의 진단 및 평가, 의사소통장애진단 및 평가, 의사소통장애진단 및 평가1,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캡스톤디자인), 의사소통장애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치료실무, 언어치료현장실무
선택 과목	노화와의사소통장애	노화와 의사소통
	다문화와의사소통	다문화언어중재와 이중언어
	말과학	실험음성학, 음성과학, 음성언어과학, 음성학, 일반음성학
	보완대체의사소통	보완대체의사소통2C
	삼킴장애	삼킴장애2C, 섭식연하장애연구
	언어기관해부생리	말언어기관해부 및 생리, 말언어기관해부 및 생리학, 언어기관의해부 및 생리, 언어기관의 해부와 생리, 언어기관해부 및 생리, 언어기관해부 및 생리학, 언어병리학해부학, 의사소통장애의해부 및 생리
	언어발달	아동언어발달, 아동언어발달세미나
	언어학	언어학과 의사소통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병리학개론, 언어치료학개론, 의사소통장애개론1C, 의사소통장애학개론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언어병리학연구방법론, 언어치료연구방법론,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통계)
	재활학	재활과학원론
	특수교육학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언어)
	구개열언어재활	구개열언어, 구개열언어치료, 구개파열언어치료, 구개파열의언어치료, 구순 및 구개파열
	뇌성마비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치료
	말운동장애	말운동구어장애특강, 말운동삼킴장애, 말운동장애 및 삼킴장애, 말운동장애와 삼킴장애, 운동구어장애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자폐 및 정신지체아 언어치료, 자폐범주장애언어치료, 자폐성범주장애언어재활, 자폐아언어치료, 자폐언어
	지적장애언어재활	정신지체아언어치료, 정신지체언어치료, 증거기반지적장애언어재활연구, 지적장애언어, 지적장애언어치료
청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 청각장애언어재활특강 및 실습, 청각장애언어치료	
학습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 학습장애언어치료	